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지방 주요도시 거점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 개발 기획 업무를 수행할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에 헬리콥터 감항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에 철도치안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항공위성서비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정원 1명(6급1)을 재배치 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6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제37호부터 제5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를 제3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제30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의2 및 제35호의3을 각각 제36호의2 및 제36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3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각각 제54호부터 제74호까지로 한다.

29. 도심융합특구 관련 법령의 운용 및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제3항 단서 중 “9개 사무소의 장은 5급”을 “9개 이내의 사무소장 직위는 5급”으로, “5개의 사무소의 장”을 “5개 이내의 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단서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을 “4급”으로, “보할 수 있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중 “2025년 3월 31일”을 “2027년 3월 31일”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1,013”을 “1,020”으로, 일반직 계 “1,003”을 “1,010”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974”를 “98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23”을 각각 “2,527”로, 3급 또는 4급 이하 “2,514”를 “2,518”로 한다.

별표 5 제2호 중 “2025년 3월 31일”을 “2027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6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국토도시시설) ①·② (생략) ③ 국토도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8. (생략) <u><신설></u> 29. ~ 51. (생략) 53. ~ 73. (생략)	제11조(국토도시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8. (현행과 같음) 29. <u>도심융합특구 관련 법령의 운용 및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u> 30. ~ 52. (현행 제29호부터 제51호까지와 같음) 54. ~ 74. (현행 제53호부터 제73호까지와 같음)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①·② (생략) ③ 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9개 <u>사무소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5개의 사무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u> ④ (생략)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이내의 사무소장 직위는 5급----- 5개 이내의 사무소장-----</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 ① ·

② (생략)

③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개 지방철도경찰대의 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58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둔다.

② ~ ⑥ (생략)

제59조(한시정원) ① · ② (생략)

③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

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4급 -----

----- 보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① -----

----- 2027년 3월 31일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한시정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u>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④ 삭 제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013</u>		<u>1,020</u>	+7	
	.		.		.		
	.		.		.		
일반직	계		<u>1,003</u>		<u>1,010</u>	+7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74</u>		<u>981</u>	+7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2,523</u>	• <u>2,527</u>	+4
일반직 계	<u>2,523</u>	<u>2,527</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514</u>	<u>2,518</u>	+4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4항, 제58조의3 제4항 및 제58조의4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2. 부동산 소비자보 호기획단 (존속기 한: 2025 년 3월 31 일)	2. 부동산 소비자보 호기획단 (존속기 한: 2027 년 3월 31 일)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6]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9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3. 제59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5년 2월 28일)	3. 제59조 제3항 관 련 한시정 원(존속기 한: 2025 년 2월 28 일)	<삭 제>	
<u>총계</u>	<u>1</u>	<삭 제>	-1
<u>일반직 계</u>	<u>1</u>	<삭 제>	-1
<u>5급 이하</u>	<u>1</u>	<삭 제>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0